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및 공개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예산군

내 용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한국환경공단,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 등에게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예산군 ○○과는 2015. 2. 1.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주)○○○○○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고, 평가결과 조례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공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2016. 1. 1. 체결 하였으나,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또한,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을 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6. 12. 31. 대행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표1]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준수사항 준수여부

준수사항	내용	준수여부
원가계산 의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고,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	준수
조례 제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제정	미준수 (조례미지정)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 실시	미준수 (평가미실시)
대행실적 평가 공개	대행실적 평가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미준수
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조치	기준 미달업체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	미준수
계약 및 지출내역 공개	대행계약내용 및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미준수

※ 예산군 제출자료 검토 재구성

그 결과 예산군 ○○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실적평가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평가결과의 공개나 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의 조치도 할 수 없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의 내용 및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주민감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예산군수는

[시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의 내용 및 대행비용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